##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0105

발의연월일: 2025. 4. 24.

발 의 자:문진석・이건태・강준현

권향엽 · 이정문 · 이연희

복기왕 • 전용기 • 장종태

이춘석 의원(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헌법」은 전문에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현행법의 영문본에는 3·1절이 Independence Movement Day로 번역되어 있는데, 이는 3·1운동이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차지하는 위상과 기념을 고려할 때 독립운동한 날 정도로 축소되는 것임.

3·1 운동을 시작으로 일제의 지배에 항거하며 비폭력 만세운동이 시작되고 독립으로 이어진 만큼 만세운동의 의미가 드러날 수 있어야 함.

이에 3·1절에 "독립만세기념일"이라고 부가명칭을 부여해 해당 국경일의 의미를 잘 나타낼 수 있게 하려는 것임(안 제2조).

법률 제 호

##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3·1절"을 "3·1절(독립만세기념일)"로 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국경일의 종류) 국경일은	제2조(국경일의 종류)		
다음 각 호와 같다.			
1. <u>3·1절</u> : 3월 1일	1. <u>3·1절(독립만세기념일)</u>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